■ 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21. 7. 13.>

[ ] 오수처리시설 [ ] 정화조 운영기구 [ ] 설치 [ ] 변경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 3일

신고인	①성명	② 생년월일
	③주소	(전화번호 :)

④건물의 종류

⑤처리시설의 종류

⑥처리방법

⑦처리용량(㎥/일) 또는 처리대상인원(00명용)

	⑧변경 전	⑨변경 후
변경내용		

「하수도법」 제3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1.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,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.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.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(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) 1부 ※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

작성방법

1. ①~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.
2. ④건물의 종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)의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.
4. ⑧·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(민원실)	→	검토	→	현지확인(필요시)	→	결재
신고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